

『구미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박세진 의원 외 6명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청소년의 스마트폰·인터넷 의존 및 게임 중독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각종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지역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, 상담, 치료, 기술적 조치 등 종합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,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- 청소년, 인터넷게임 중독 등 관련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-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 보호조치 및 기술적 보호조치(안 제5조 ~ 안 제6조)
-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경비 지원규모 및 방법을

규정함(안 제8조)

- 정보화 역기능 예방·해소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·단체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, 종합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위하여 법인·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9조 ~ 제10조)

4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: 「청소년보호법」, 「국가정보화 기본법」,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제정조례안은

- 「청소년보호법」과 「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」에 따라 청소년의 스마트폰·인터넷·게임중독 및 정보통신망을 통한 각종 유해정보 노출로 인한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·해소하기 위하여 종합적·기술적 보호조치를 조례에 규정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자고 하는 것으로,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